제 호

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

매도인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법인 • 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	(휴대)전화번호			
매수인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(휴대)전화번호				
허가사항	불허가사유							
	대상권리				예정금액(원)			
	번 호	소 재 지		법 법 정	지 목 법 정 현 실		년적(m²)	이용목적
정 착 물	종 류			내 용			예정금액(원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

직인

※ 유의사항

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